

제318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
검 토 보 고 서



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4. 20.
전문위원 신정경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개요

- 가. 의안번호: 제583호
- 나. 제출자: 강수진 의원 등 20인
- 다. 제출일자: 2026. 3. 23.
- 라. 회부일자: 2026. 4. 7.

2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」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규정 신설(안 제44조의2)
- 나. 영상회의록 공개기준과 공개대상 규정 신설(안 제44조의3)
- 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조치
- 다. 사전협의: 의회사무국
- 라. 입법예고: 2026. 3. 30.~2026. 4. 3.(의견 없음)

II. 검토의견

1. 주요 내용

- 가.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시간 중계 (안 제44조의2 신설)

안 제44조의2

-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의 의사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.
- ② 중계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)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비공개 회의는 제외한다.

- 중계 근거: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의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
- 대상 범위: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하되,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으로 한정하며 비공개 회의는 제외

- 나.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(안 제44조의3 신설)

안 제44조의3

-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(이하 "영상회의록"이라 한다)을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② 영상회의록의 공개는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.

- 공개 기한: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(영상회의록)을 공개해야 함.

- 비공개 범위: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 없는 시간이나 기존 회의록 비공개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.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(안 제4조제2항 등)

개정 조항	정비대상 조문	법제처 권고안
제4조제2항	부의된	(회의에) 부친
제6조제1항	부의안건	제출안건
제6조제2항	~에 있어서	~할 때
제6조제3항	긴급을 요한다고	긴급하다고
제9조제2항	~하는 때	~할 때
제11조제1항	의결을 얻어	의결을 거쳐
제12조제2항	없는 한	없으면
제18조제1항	동의를 얻어야	동의를 받아야
제19조제1항	~에 있어서의	~에서
제27조	2회에 한하여	두 차례에 한정하여
제39조제1항	수개	여러 개
제47조	~를 요하지	~가 필요하지
제53조제2항	승인을 얻어야	승인을 받아야
제62조	~에 한하여	~에 한정하여
제69조제4항	한차례에 한하여	한 차례만

2. 검토 의견

○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

- 주민 접근성 강화: 현재 성북구의회는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.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주민의 의정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타 자치구 현황 반영: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의회가 본회의를 중계하고 있으며, 11개 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를 중계하고 있음. 성북구의회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○ 상위 법령과의 관계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5조(회의의 공개) 및 제83조(회의규칙)에 따라 지방의회
의 자율적인 규정 마련 권한 범위 내에 있으며, 법적 저촉 사항은 없는 것
으로 검토됨.

○ 자구 정비의 적절성

- 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조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
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임.

3. 추진 일정

- 2026년 7~8월 중 홈페이지 내 생방송 탭 개설 및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
- 2026년 8월 이후 제320회 임시회부터 본격적인 실시간 중계 실시 예정

4. 종합 의견

본 개정안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지방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려는
목적으로,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개정이 타당
한 것으로 사료됨.

별첨1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75조(회의의 공개 등)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83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4조(회의록)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,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